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 및 물품관리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

#### [예산 과목 집행 부적정 집행 내역]

회계년도	적 요	지급액 (원)	집행과목	집행하여야 할 과목	비고 (구분)
****년도	*** **	***,000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배정

※ ○○ 제출자료 재구성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8.1.1.시행)  
I.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⑩ 예산 집행절차 준수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설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예산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018.7) 및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30.시행)에 의하면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는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소모성 물품구입 및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산 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 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조제2항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제24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과 물품카드 등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고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고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는 읍·면 물품관리관은 읍·면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1. 현황과 같이 \*\*\* \*\*를 구입하면서 집행하여야 할 과목에서 집행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서 부당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물품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재물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물품으로 물품대장에 입력(등록)하여 관리되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대장에 미 입력(등록)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재물조사대상에 해당하는 \*\*\* \*\*를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물품대장 입력(등록)을 누락하는 등 세출예산 과목 및 물품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A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물품대장에 누락 된 물품에 대하여 입력(등록)조치하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폐기)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불용물품 및 처분방식 미결정 내역]

물품명	취득일자	내구 연한	수량	취득금액 (단위: 원)	비고
*****	20**.**.**.	6년	1	***,000	비정수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조제2항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지정할 수 있으며, 제3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읍면의 물품관리관은 읍·면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8.7)에 의거 불용품의 처분 방법에는 매각, 양여, 해체, 폐기, 불용품 보존 등이 있고, 폐기하기로 결정한 불용품을 처리할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폐지 및 고철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철이 포함된 불용품 폐기 시에는 고철과 폐기물 분리하여 고철 매각 수입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 취득한 \*\*\*\*\*를 불용결정 및 처분을 하면서 물품관리관(면장)의 결정(결재) 없이 담당자 임의로 해당물품을 새올 물품시스템에 20\*\*.\*\*.\*\*. 불용결정 입력하여 폐기 처분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처분 시스템 정리를 하지 않는 등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폐기)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불용물품 결정 및 처분(폐기)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B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폐기 처분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새올 물품시스템을 정리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계약업무 소홀(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아래와 같이 20\*\*년 ◁◁ \*\*\*\*\* \*\* 사업을 ▷▷ 대표 D과 20\*\*.  
\*\*,\*\*. 계약체결하여 시행하고 20\*\*, \*\*,\*\*. 공사대금을 지급 하였다.

(단위: 원)

공사명	계약금액 (지급액기준)	지급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액	계약상대자
◁◁ ***** ** 사업	**,00,000	20**,**, **.	20**,**,**.~ 20**,**,**	**,000	▷▷ D

※하자보수보증금률 100분의3 적용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30.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제3호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영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 \*\*\*\*\* \*\*’ 을 시행하면서 계약(지급)금액 \*\*, \*00천 원으로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제외 대상 공사가 아님으로 검사가 완료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사업 하자보수보증금률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납부토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 징구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징구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미 징구 한 F(현. ♀♀)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반환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성명	말소/정지 일자	반환통보서 송달	반환 여부
E	20**.**.*.	미송달	미반환
F	20**.**.*.	미송달	미반환
G	20**.**.*.	미송달	미반환
H	20**.**.*.	미송달	미반환
I	20**.**.*.	미송달	미반환
J	20**.**.*.	미송달	미반환
K	20**.**.*.	미송달	미반환
L	20**.**.*.	미송달	미반환
M	20**.**.*.	미송달	미반환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제1호에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의3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의3제 2항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 ○○ 종합감사 실시 후 ♠♠-\*\*\*\*(20\*\*.\*\*.\*\*)호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처분요구서 \*\*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반환 안내 소홀로 행정상 시정 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호로 종합감사 처리결과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20\*\*. \*. ○○ 종합감사 결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행정상 현지조치하였으나, 20\*\*.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자 9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폐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반환업무를 소홀히 한 L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2. 관계법령(판단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
-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의 경우(안쪽 지름이 50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하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그러나 ○○에서는 위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현황과 같이 ♡♡ \*\*\*\* \*\* 사업 외 2건의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사항을 ○○ 자체 자료를 살펴보면 지하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후 공사중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였고, 공사의 준공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 신고를 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3~4개월에 신고를 하여 준공확인증을 받았다.

- 지하수개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수질검사, 채수량 검사(양수시험 확인), 안정수위 기록부, 굴착 심도 측정임에도 양수시험 및 안정수위 기록부 미확인 3건, 굴착 심도 측정 미확인 3건으로 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이 이를 감독 및 확인하여야 함에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 사항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처리한 R(현. ●●)에게 신분상 조치 '훈계'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고성군 ○○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을 20\*\*년부터 20\*\*년 현재까지 관리함에 있어 항상 금\*,\*\*,\*\*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따라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르면 회계관계 공무원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하고, 별표 5에 따르면 읍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경리담당자가 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이상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 따르면 재무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에는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와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는 수납 및 반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르면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하고, 같은 규칙 제77조 제5항에는 출납원은 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을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이상 이 사실을 통보토록 하여야 하며,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업무 부적정

그러나 ○○에서는 T이 회계업무담당으로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S은 경리업무담당자로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지정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에서는 전년도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어 이월하여야 함에도 총괄 이월하여 그 원인 및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75조내지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 및 반환하여야 하나 아래 ○○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확인명세와 같이 20\*\*.\*\*.\*~20\*\*.\*\*.\*까지 수납된 4대보험료 환급금, 원인을 알수 없는 고성군수 입금액, 발생이자 총 금\*,\*\*,\*원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으며, 또한 계속 이월되어 온 현금은 그 원인을 밝혀 반환기간

이 경과된 경우에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사전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군 세입처리함이 타당함에도 그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이월하고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확인 명세>

(20\*\*.\*\*.\*.현재)

날짜	부기명	금 액 (원)
계	14건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조치할 사항 ○○장은

계속 이월 되어 온 현금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혀 지급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하여 정리하시고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잔액에 대하여는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 군 세입 처리 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소 관 부 서 ○ ○  
조 치 부 서 ○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명세]

사업명	품의일자	품의금액 (원)	집행일자	계약 및 집행금액 (원)	세출예산 목적사업 과목	위반사항
계	3건	**,***,000		**,***,**		
☞ *** 정비공사	1*.**.**. .	**,***,000	1*.**.**. .	**,***,**	-	목 적 사 업 을 위반하여 마을 안길정비 목적 으로 발주 및 집행
☞ **** **공사	1*.**.**. .	**,***,000	1*.**.**. .	**,***,**	-	목 적 사 업 을 위반하여 농로 보수보강사업비 목적으로 발주 및 집행
		**,***,000	1*.**.**. .	**,***,**	-	목 적 사 업 을 위반하여 농로 보수보강사업비 목적으로 발주 및 집행

## 2. 관계법령(판단기준)

- 지방재정법 38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는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는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같은 조 제3항에는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1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평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과 예산 이체)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제1항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3, 3.예산의 변경, 예산의 이용에 따르면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없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에서는 위 현황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명세와 같이 “**㉠** **\*\*\* 정비공사**” 는 사실상 **\*\*\*\*공사**로 **\*\*\*\*\* \*\***(정책사업) 사업비에서 발주 및 집행할 수 없고, “**㉠㉠ \*\*\*\*\*공사**” 는 사실상 **\*\*\*\*\* 공사**로 **\*\*\*\*** 및 **\*\*\*\***(정책사업) 사업비에서 발주 및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2건의 공사를 목적사업이 다른 총 3개 사업비로 금**\*\*,\*\*,\*\*\*,\*\*\***원으로 품의 발주하고, 도급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원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

#### 처분 사항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2건의 공사를 목적사업이 다른 3개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한 U과 V(현. **⊗⊗**) 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통보 · 주의요구

제 목 경지정리지구 환지 청산금 보관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지정리지구 환지 청산금 보관 명세]

지구명	시행년도 (준공)	청산금 보관 계좌 최초 개설일자	보관금액 (원)	시행후 경과 기간 (년)
6개지구			*,***,***	
-	1***	1***.**.**.	*,***,***	**
-	1***	1***.**.**.	*,***,***	**
-	1***	1***.**.**.	*,***,***	**
-	1***	1***.**.**.	*,***,***	**
-	1***	1***.**.**.	*,***,***	**
-	1***	1***.**.**.	*,***,***	**

※ ○○ 내부자료 및 진술에 따라 편집함.

## 2. 관계법령(판단기준)

○ 농어촌정비법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5항에 따르면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제6항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청산금의 공탁) 제1항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제2항에는 종전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청산금을 지급하되,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청산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 고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제17조(환지청산)에는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 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위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같은 조례 제1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고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제3조(현금보관)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에 따르면 취급자는 청산조서, 현금출납부, 수납부, 지급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9조(청산금의 공탁)에는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떠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같은 규칙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에는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징수·교부의 위임)에는 군수는 청산금의 징수·교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에는 경지정리지구 환지 청산금 징수·교부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없다.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에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에서는 구 고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구 고성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에 따라 \*\*\*\* \*\*\*\*\*은 1\*\*\*년도, \*\*·\*\*\*\* \*\*\*\*\*은 1\*\*\*년도, \*\*·\*\*\*\* \*\* \*\*\*\*\*은 1\*\*\*년도, \*\*\*\* \*\*\*\*\*은 1\*\*\*년도, \*\*\*\* \*\*\*\*\*은 1\*\*\*년도, \*\*\*\* \*\*\*\*\*은 1\*\*\*년도에 \*\*\*\*\* 시행 및 준공후 당해연도 또는 익년도에 환지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까지 ○○에 보관된 계좌를 확인한 결과
  - 1\*\*\*\*\*년도 시행 준공한 \*\*\*\* \*\*\*\*\* 환지청산금 보관계좌(\*\*\*\*\*-\*\*-\*\*\*\*\*)는 1\*\*\*.\*\*\*.\*\*\*.(현 1\*\*\*.\*\*\*.\*\*\*.) 개설하여 현재까지 금\*,\*\*\*,\*\*\*원을,
  - 1\*\*\*년도에 시행 준공한 \*\*·\*\*\*\* \*\*\*\*\* 환지청산금 보관계좌(\*\*\*\*\*-\*\*-\*\*\*\*\*)는 1\*\*\*.\*\*\*.\*\*\*. 개설하여 현재까지 금\*,\*\*\*,\*\*\*원을
  - 1\*\*\*년도에 시행 준공한 \*\*·\*\*\*\* \*\* \*\*\*\*\* 환지청산금 보관계좌(\*\*\*\*\*-\*\*-\*\*\*\*\*)는 1\*\*\*.\*\*\*.\*\*\*.(현 2\*\*\*.\*\*\*.\*\*\*.) 개설하여 현재까지 금\*,\*\*\*,\*\*\*원을
  - 1\*\*\*년도에 시행 준공한 \*\*\*\* \*\*\*\*\* 환지청산금 보관계좌(\*\*\*\*\*-\*\*-\*\*\*\*\*)는 1\*\*\*.\*\*\*.\*\*\*. 개설하여 현재까지 금\*,\*\*\*,\*\*\*원을
  - 1\*\*\*년도에 시행 준공한 \*\*\*\* \*\*\*\*\* 환지청산금 보관계좌(\*\*\*\*\*-\*\*-\*\*\*\*\*)는 1\*\*\*.\*\*\*.\*\*\*.(현 2\*\*\*.\*\*\*.\*\*\*.) 개설하여 현재까지 금

\*\*,\*\*원을

- 1\*\*\*년도에 시행 준공한 \*\*\*\* \*\*\*\*\* 환지청산금 보관계좌 (\*\*\*\*\*-\*\*-\*\*\*\*\*)는 1\*\*\*.\*\*.\*\*. 개설하여 현재까지 금\*\*,\*\*원을
- 총 6개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계좌에 \*,\*\*,\*\*원을 보관하고 있다.

○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등 관계 법규), 고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고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지정리지구 환지계획 인가 고시후 90일이내에 정당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징수 및 교부를 하여야 했으며, 정당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법원에 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에서는 당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총 6개 경지정리사업 환지 청산금의 교부 대상자인 정당한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상태로 경지정리사업 시행이 완료된후 \*\*년~\*\*년이 경과된 상태이다.

○ 또한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경지정리지구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사무가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없음으로 고성군수의 사무로 현재 고성군 ㉠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인계·인수의 절차없이 계속하여 업무를 방치하고 있고,

○ 민법 16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채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에서 보관하고 있는 총 6개 경지정리사업 시행후 적게는 \*\*년 많게는 \*\*년이 경과되어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에 대한 사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즉시 ○○장은 고성군수(㉠)에게 경지정리지구 환지 청산금 업무의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세외수입 조치토록 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장은**

고성군수(☎☎)과 경지정리지구 환지 청산금 업무의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세외수입 조치 될 수 있도록 협의하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주의)

【일련번호: ㄱㄱ】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ΩΩ\*\*\*\*정비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 지내 \*\*\*\* 정비를 위하여 20\*\*,\*\*,\*\*. ▽▽(대표 W)과 도급액 \*\*,\*\*천원에 「ΩΩ\*\*\*\*정비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미반영된 자재 반영 및 재경비 정산 등의 사유로 20\*\*,\*\*,\*. 설계변경으로 도급액 \*\*,\*\*천원으로 변경 계약하여 20\*\*,\*\*,\*.준공 하였음.

공사명	위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ΩΩ **** 정비공사	■■■	-배수공: L=***m -석축공: L=**.*m, A=**.*m <sup>2</sup>	**,**	**,**	**,**	20**.**.***. ~ 20**.**.***.	▽▽ W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구)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를 보면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 드럼 등)은 사용 불가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 ▽▽(대표 W)과 계약을 체결한 「ΩΩ\*\*\*\*정비공사」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내역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원 반영하였고, 이윤은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이내)’의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윤율을 \*\*.\*\*%로 잘못 산출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요청 시 [표 1]과 같이 사용불가 항목(\*\*\*\*\* 등)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비 및 잘못 계산된 이윤에 대하여 내역 확인 후 정산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 \*\*,\*\*\*천원을 지급하여 \*\*\*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내역]

연번	사용년월	사용내역	당초(원)	변경(원)	사유, 차액
1	20**.**. **.	****	** ,***	** ,***	
2	20**.**. **.	***	*** ,***	*** ,***	
3	20**.**. **.	*****	** ,***	-	불가항목(교통안전시설물)
4	20**.**. **.	****	*** ,***	-	불가항목(교통안전시설물)
5	20**.**. **.	*****	*** ,***	-	불가항목(교통안전시설물)
	소 계		*** ,***	*** ,***	
	안전관리비적용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일반관리비(6%)	6%	* ,*** ,***	* ,*** ,***	
	이윤(15%)	15% 이내	** .**% * ,*** ,***	** .**% * ,*** ,***	△ *** ,***
	총 원 가		** ,*** ,***	** ,*** ,***	
	부가가치세(10%)		* ,*** ,***	* ,*** ,***	
	도 급 액		** ,*** ,***	** ,*** ,***00	△ *** ,***

※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을 소홀히 처리한 X(현. 퇴직)에게 퇴직불문(주의)으로 조치함.

### 조치할 사항 ○○장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정산 없이 지급한 안전관리비 등 624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